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1-1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1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가. 기금의 존속기간 도래 : 2011. 2. 1
- 나. 「알기 쉬운 법률기준」에 따라 법률용어 순화

2. 주요내용

- 가.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의 존속기한 5년 연장(부칙)
 -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1년 2월 2일부터 5년 연장 함.
- 나. 법령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를 반영하여 조문상의 일부 표현 변경

3. 개정근거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계획
: 청소행정과-15927(2010. 12. 23)

4. 개정조례안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6. 기타사항

- 가. 관련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
- 나. 합 의 : 해당사항없음
- 다. 규 제 : 해당사항없음
- 라. 기타사항

- (1) 입법예고 : 2010. 12. 30. ~ 2011. 1. 5.(제출된 의견 없음)
- (2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1. 1. 6)
- (3)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(4) 신 · 구조문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”로 하고, “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”으로 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기금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구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심의위원회”로 하고, 제2항 중 “각1인”을 “각 1명”으로, “18인”을 “18명”으로 하며, 제4항 중 “자를”을 “사람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인”을 “명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연2회”을 “연 2회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인”을 “명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616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
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1조 중 “공포한 날부터”를 “2011년 2월 2일
부터”로 하고, 제2조 중 “시행일로부터”를 “2011년 2월 2일부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라 조성되는 재원으로 <u>서울특별시마포구</u>(이하 "구"라 한다)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<u>서울특별시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</u>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·서울특별시 용산구·서울특별시 종로구·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구에 납부하는 금액 2. (생략) <p>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운용·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<u>서울특별시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운용심의위원회</u>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<u>각 1인</u>을 포함하여 <u>18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<u>서울특별시</u> 마포구..... <u>서울특별시 마포구</u> <u>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</u>.....</p> <p>제2조(기금의 조성)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</u>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..... 1. <u>서울특별시 마포구</u>(이하 "구"라 한다)....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<u>서울특별시</u> <u>마포구</u> <u>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</u> <u>운용심의위원회</u>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..... ②<u>각 1명</u><u>18명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③ (생략)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구 본청의 국장 <u>4인</u> 2. 구의회 의원 <u>3인</u> 3. 주민대표 <u>3인</u> 4.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<u>6인</u>	③ (현행과 같음) ④ 사람을 1. <u>4명</u> 2. <u>3명</u> 3. <u>3명</u> 4. <u>6명</u>
제8조(회의) ① (생략)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<u>연2회</u>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 ③ (생략)	제8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연 2회</u> ③ (현행과 같음)
제10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<u>각1인</u> 을 둔다. ② (생략)	제10조(간사 등) ① <u>각 1명</u> ②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<u>예산의 범위 안에서</u>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	제11조(수당 등) <u>예산의 범위에서</u>
부 칙	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<u>공포한 날부터</u> 시행한다.	제1조(시행일) <u>2011년 2월 2일부</u> 터.....
제2조(기금의 존속기한)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시행일로부터</u> 5년으로 한다.	제2조(기금의 존속기한) <u>2011년 2월 2일부</u> 터